

	직원인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2. 3. 5.
		최종개정일자	2022. 6. 20.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신학원정관 제5장 제3절과 직원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,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9.14.><개정 2020.1.31><개정 2022.6.20>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위원회는 행정지원처장(위원장), 행정지원처 인사담당(간사), 기획산학처장, 교무입학처장, 3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3.15>

제3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5.9.14>

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(인사 관련 규정 제.개정, 진정 및 청원사항 등)

② 총장의 직원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단, 전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③ 위원회 규정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

④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의 제반사무 처리는 인사담당 간사로 한다.<개정 2020.1.31>

제7조(비밀유지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제척사항) 재직 중인 인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제척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